

농업경영체 등록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올해 말까지 본등록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등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또한 앞으로 모든 정책의 대상이 등록농가에 한해 시행 될 예정이어서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최근 한국양봉협회의 건의로 시행되는 양봉사료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양봉업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양봉농가들의 등록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각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고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내용을 모를 수 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031-463-1556)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소를 알아보면 된다.

※ 양봉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협회보 3월호에 게재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게재한다.

▣ 질문으로 알아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 농가등록제는 무엇인가요?

기초적인 농사정보만 등록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소를 키우는지, 돼지를 키우는지 등의 기초적인 농사정보를 등록하세요.

농가등록제는 경영주의 인적사항은 물론 작물재배, 축산규모 등 농업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적,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각 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영농능력과 영농목적이 다릅니다. 농업경영체로서 발전가능성도 다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농업정책으로 농업인 여러분을 충분하게 만족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농사정보를 등록하면 농가별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책사업의 신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농가등록제는 농업인 여러분이 정책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 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으면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등록된 농가만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등록하지 않으신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농정의 첫걸음입니다.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업의 주업여부 등에 따라 농가를 주업농·고령농·취미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고령농에게는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농사를 직접 짓는 정도의 수입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미농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절감된 돈은 주업농과 고령농을 지원하는데 쓰여집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주업농에게는 영농규모화와 소득안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고령농·취미농이 아닌 모든 농업인이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금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일괄등록이 시행됩니다.

2007년 각 도별 1개 읍면씩, 총 9개 읍면,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일괄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마무리 되면 직불제 사업에 우선 활용하게 됩니다.

2009년까지 일괄등록이 완료되면 2010년 이후부터 상시관리 체제가 되어 신규 등록, 변경등록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 어떤 내용을 등록하나요?

주민정보와 농지정보, 축산정보 등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 주민정보 : 경영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종사 여부 등
-농업인이 1인 이상있는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대상입니다.
- 농지정보 : 지번, 지목, 재배작목 및 면적, 농업 조수십 등
-사실상 농업에 이용된 자경 및 임차농지가 등록대상입니다.
- 축산정보: 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량 등
- 농외소득정보
그밖에 교육정보, 농림사업정책자금 수혜정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정보 등 상세정보에 대한 등록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어디서 등록하나요?

농장이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농업인들이 보다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이장 등 마을대표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임을 통해서 대리 등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가는 농사정보가 바뀌었거나 추가되는 것만 기재하면 되므로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목이 '임야' 인 경우: 임야에서 재배하는 작목의 면적산출 근거

▶ 농사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나요?

농업인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등록하셔도 됩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등록한 자료가 과세자료 등 등록제 본연의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농업인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등록하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 관련자를 분명히 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031-463-1556) **양봉**

☐ 등록안내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 경기지원 (031) 446-0285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강원지원 (033) 254-6271 : 강원도
- 충북지원 (043) 271-9640 : 충청북도
- 충남지원 (042) 255-8218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전북지원 (063) 242-8871 : 전라북도
- 전남지원 (062) 970-6236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경북지원 (053) 327-0993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경남지원 (055) 275-2818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제주지원 (064) 728-5205 : 제주특별자치도